1. 개정이유

가. 재검토기한(일몰제) 설정

1)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소관 훈령(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등 13개)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래 규정에 '재검토기한' 조문을 신설하여 일괄개정하고자 함

조 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
제2조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5조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간행 규정	
제6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8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0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11조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2조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연구윤리규정	
제13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립문화유산연구원훈령 제 호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훈령 13개 일괄개정안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등 13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헤리티지:역사와 과학」 간행규정의 개정)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간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의 개정)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헤리티지:역사와 과학」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연구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 호, 2025. 2. 14.>

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간행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연구윤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